

## 하남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3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21일

발의자 : 방미숙 의원

### 1. 제정이유

하남시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대상자, 지원범위,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~제7조)
- 다.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# 5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21. ~ 1. 26.
- 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# 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## 하남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”이란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·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.
3. “법률지원”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,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률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·인력·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이 조례는 아동·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지원 대상자)**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·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.

**제6조(지원 범위)**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.

1. 상속의 포기 :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
2. 한정승인 :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

**제7조(지원 방법 등)**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·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·청소년에게 법률상담, 무료 소송대리,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회복지사, 아동·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원 신청)**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·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신청서			
신 청 인	주 소		
	성 명		생 년 월 일
	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
대 리 인	주 소		
	성 명		생 년 월 일
	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
	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		
법률지원 요청내역			
<p>본인은 상속채무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,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			
<p>「하남시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하남시장 귀하</b></p> <p>※ 제출서류 : 1.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. 2.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. 끝.</p>			

[별지 제2호서식]

## 아동·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

연 번 (접수번호)		신 청 일 (접수일)		
신 청 인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		
	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대 리 인				
신 청 내 용				
지 원 내 역 (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)				
진행사항 및 결 과				

## □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## □ 청소년 기본법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